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6	제 정 일 자	2013.8.28							
	도양환경보전법			개정일자(번호)	25.10.01 (2)	쪽 번 호	1 / 4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제 1 장 총칙	부처명칭 변경	해당 조항	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환경부”라 약칭한다.) <개정 2025.10.01.>											
	토양오염물질	법제 2 조 규칙별표 1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10.01.>부처명만 변경 1.카드뮴 및 그 화합물 2.구리 및 그 화합물 3.비스 및 그 화합물 4.수은 및 그 화합물 5.납 및 그 화합물 6.6 가크롬화합물 7.아연 및 그 화합물 8.니켈 및 그 화합물 9.불소화합물 10.유기인화합물 11.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2.시아나화합물 13.페놀류 14.벤젠 15.톨루엔 16.에틸벤젠 17.크실렌 18.석유계총탄화수소 19.트리클로로에틸렌 20.테트라클로로에틸렌 21.벤조(a)피렌 22.1,2-디클로로에탄 23.다이옥신(퓨란 포함) 2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증명서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법제 2 조 규칙 별표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허가시설) ①경유(주유소): 10,000ℓ (지하) ②경유(광통신): 14,000ℓ (지하) 해당사항 없음 주)유독물 저장시설(3 개 품목) : 황산, 염산, 수산화나트륨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증명서 위험물 허가증 유독물사용업등록증									
			[규칙 별표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개정 2025.10.01>											
			<table><tr><th>구분</th><th>대상 범위</th></tr><tr><td>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td><td>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 4 류 위험물 중 제 1.제 2.제 3.제 4 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 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 만 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td></tr><tr><td>2. 제한물질,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td><td>「화학물질관리법」 제 18 조제 5 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같은 법 제 28 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 중 별표 1 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2-디클로로에탄 저장시설에 한정한다]</td></tr><tr><td>3. 송유관시설</td><td>송유관안전관리법 제 2 조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시설중 송유용 배관 및 탱크</td></tr><tr><td colspan="2">4. 기타 위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td></tr></table>					구분	대상 범위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 4 류 위험물 중 제 1.제 2.제 3.제 4 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 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 만 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	2. 제한물질,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 18 조제 5 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같은 법 제 28 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 중 별표 1 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2-디클로로에탄 저장시설에 한정한다]	3. 송유관시설
구분	대상 범위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 4 류 위험물 중 제 1.제 2.제 3.제 4 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 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 만 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													
2. 제한물질,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 18 조제 5 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같은 법 제 28 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 중 별표 1 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2-디클로로에탄 저장시설에 한정한다]													
3. 송유관시설	송유관안전관리법 제 2 조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시설중 송유용 배관 및 탱크													
4. 기타 위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 비교 :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용량산출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동일한 부지안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는 각 시설의 용량을 합산한다. 2. 부지가 연결되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동일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는 각 시설의 용량을 합산한다.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6	제 정 일 자	2013.8.28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일자(번호)	25.10.01 (2)	쪽 번 호	2 / 4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제 2 장 토양오염의 규제	토양오염의 신고	법제 11 조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유출 시,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오염사고 발생시 신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법제 12 조① 영제 6 조 규칙제 8 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신고 완료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 증명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법제 12 조① 영제 6 조 규칙제 8 조의 2 규칙제 9/10 조	규칙 제 8 조의 2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실시<개정 2025.07.07.>	발생시 및 1 회/연 이상 준수평가 후 해당 시 변경신고 실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변경(폐쇄)신고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 증명서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교체하거나 토양오염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을 변경하는 경우 5.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저장용량을 신고용량 대비 30% 이상 증설 (신고용량 대비 30% 미만의 증설이 누적되어 신고용량의 3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의 통보	법제 12 조④ <개정 '22.12.13>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화학물질관리법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 1 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허가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관할관서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법제 12 조⑤ <개정 '22.12.1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방지시설설치 완료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 증명서	
		영제 7 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별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부식·산화방지를 위한 처리를 하거나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누출방지 성능을 가진 재질을 사용하거나 이중 벽 탱크 등 누출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2.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지하에 매설되는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감지하거나 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기 등의 시설을 설치할 것 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부터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될 경우에 대비하여 오염확산방지 또는 독성 저감 등의 조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것				
	토양오염검사	법제 13 조 영제 8 조/8 조의 2 규칙 15 조의 2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는 정기적 으로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한다.	주기적 토양오염검사 실시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토양오염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로 구분하여 한다. 다만, 누출검사는 저장시설 또는 배관이 땅속에 묻혀 있거나 땅에 붙어 있어 누출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개정 2017. 11. 28.>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6	제 정 일 자	2013.8.28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일자(번호)	25.10.01 (2)	쪽 번 호	3 / 4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제 2 장 토양오염의 규제	누출검사 (토양오염 우려기준)	규칙제 13 조 규칙별표 3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준은 별표 3 의 토양오염 우려기준 중 3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을 말한다.			당사는 다음 지역에 해당됨 ☐ 1 지역 ☐ 2 지역 ☒ 3 지역(누출검사 대상)				
			[별표 3] 토양오염 우려 기준			(단위 : mg/kg) <개정 2025. 08.07.>				
			물질	1 지역	2 지역	3 지역	물질	1 지역	2 지역	3 지역
			카드뮴	4	10	60	시안	2	2	120
			구리	150	500	2,000	페놀	4	4	20
			비소	25	50	200	벤젠	1	1	3
			수은	4	10	20	톨루엔	20	20	60
			납	200	400	700	에틸벤젠	50	50	340
			6 가크롬	5	15	40	크실렌	15	15	45
			아연	300	600	2,000	석유계총탄화수소(TPH)	500	800	2,000
니켈	100	200	500	트리클로로에틸렌(TCE)	8	8	40			
불소	800	1,300	2,00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4	4	25			
유기인화합물	10	10	30	벤조(a)피렌	0.7	2	7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	4	12	1,2-디클로로에탄	5	7	70			
				다이옥신(퓨란 포함)	160	340	1,000			
			비 고 : 1 지역: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광천지·대·학교용지·구거·양어장·공원·사적지·묘지인 지역과 어린이 놀이시설 부지 2 지역: 지목이 임야·염전·대·창고용지·하천·유지·수도용지·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 및 잡종지인 지역 3 지역: 지목이 공장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잡종지인 지역과 국방·군사시설 부지							
검사항목	규칙제 14 조 규칙별표 5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별 토양오염검사 항목은 별표 5 와 같다.			-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BTEX) -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별표 5]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별 토양오염검사항목 <개정 2025.10.0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검사 항목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 시설			○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석유계총탄화수소(TPH)					
		2. 제한물질·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카드뮴·구리·비소·수은·납·6 가크롬·아연·니켈·불소·유기인화합물·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시안·페놀·트리클로로에틸렌(TCE)·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1,2-디클로로에탄 및 벤조(a)피렌 중 해당 항목					
		3. 송유관 시설			○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석유계총탄화수소(TPH)					
		4. 그 밖에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관리대상시설 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 대상시설 별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검사항목					
		※ 비 고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중 나프타, 휘발유 등 방향족탄화수소류가 주성분인 석유류를 저장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4 개 항목을, 항공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 원유 등 지방족탄화수소류가 주성분인 석유류를 저장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항목만을 검사하고,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을 각각 저장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항목만을 검사한다. 2. 그 밖의 유종(油種)으로서 구성성분을 고려하여 한 가지 검사항목만으로 오염도검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항목만을 적용한다.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6	제 정 일 자	2013.8.28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일자(번호)	25.10.01 (2)	쪽 번 호	4 / 4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제 3 장 토양보전 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토양오염대책기준	법제 16 조 규칙제 20 조 시행규칙 [별표 7]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토양오염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규칙 제 20 조 토양오염대책기준 :법 제 16 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대책기준은 별표 7 과 같다. 시행규칙 [별표 7] 토양오염대책기준 <개정 2025.08.07> (단위 : mg/kg)																																																																																																												
	<table><tr><th>물질</th><th>1 지역</th><th>2 지역</th><th>3 지역</th><th>물질</th><th>1 지역</th><th>2 지역</th><th>3 지역</th></tr><tr><td>카드뮴</td><td>12</td><td>30</td><td>180</td><td>시안</td><td>5</td><td>5</td><td>300</td></tr><tr><td>구리</td><td>450</td><td>1,500</td><td>6,000</td><td>페놀</td><td>10</td><td>10</td><td>50</td></tr><tr><td>비소</td><td>75</td><td>150</td><td>600</td><td>벤젠</td><td>3</td><td>3</td><td>9</td></tr><tr><td>수은</td><td>12</td><td>30</td><td>60</td><td>톨루엔</td><td>60</td><td>60</td><td>180</td></tr><tr><td>납</td><td>600</td><td>1,200</td><td>2,100</td><td>에틸벤젠</td><td>150</td><td>150</td><td>1,020</td></tr><tr><td>6 가크롬</td><td>15</td><td>45</td><td>120</td><td>크실렌</td><td>45</td><td>45</td><td>135</td></tr><tr><td>아연</td><td>900</td><td>1,800</td><td>5,000</td><td>석유계총탄화수소(TPH)</td><td>2,000</td><td>2,400</td><td>6,000</td></tr><tr><td>니켈</td><td>300</td><td>600</td><td>1,500</td><td>트리클로로에틸렌(TCE)</td><td>24</td><td>24</td><td>120</td></tr><tr><td>불소</td><td>2,400</td><td>3,900</td><td>6,000</td><td>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td><td>12</td><td>12</td><td>75</td></tr><tr><td>유기인화합물</td><td>-</td><td>-</td><td>-</td><td>벤조(a)피렌</td><td>2</td><td>6</td><td>21</td></tr><tr><td>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td><td>3</td><td>12</td><td>36</td><td>1,2-디클로로에탄</td><td>15</td><td>20</td><td>210</td></tr><tr><td></td><td></td><td></td><td></td><td>다이옥신(퓨란 포함)</td><td>500</td><td>1,000</td><td>3,000</td></tr></table>							물질	1 지역	2 지역	3 지역	물질	1 지역	2 지역	3 지역	카드뮴	12	30	180	시안	5	5	300	구리	450	1,500	6,000	페놀	10	10	50	비소	75	150	600	벤젠	3	3	9	수은	12	30	60	톨루엔	60	60	180	납	600	1,200	2,100	에틸벤젠	150	150	1,020	6 가크롬	15	45	120	크실렌	45	45	135	아연	900	1,800	5,000	석유계총탄화수소(TPH)	2,000	2,400	6,000	니켈	300	600	1,500	트리클로로에틸렌(TCE)	24	24	120	불소	2,400	3,900	6,00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2	12	75	유기인화합물	-	-	-	벤조(a)피렌	2	6	2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3	12	36	1,2-디클로로에탄	15	20	210					다이옥신(퓨란 포함)	500	1,000	3,000
	물질	1 지역	2 지역	3 지역	물질	1 지역	2 지역	3 지역																																																																																																							
카드뮴	12	30	180	시안	5	5	300																																																																																																								
구리	450	1,500	6,000	페놀	10	10	50																																																																																																								
비소	75	150	600	벤젠	3	3	9																																																																																																								
수은	12	30	60	톨루엔	60	60	180																																																																																																								
납	600	1,200	2,100	에틸벤젠	150	150	1,020																																																																																																								
6 가크롬	15	45	120	크실렌	45	45	135																																																																																																								
아연	900	1,800	5,000	석유계총탄화수소(TPH)	2,000	2,400	6,000																																																																																																								
니켈	300	600	1,500	트리클로로에틸렌(TCE)	24	24	120																																																																																																								
불소	2,400	3,900	6,00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2	12	75																																																																																																								
유기인화합물	-	-	-	벤조(a)피렌	2	6	2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3	12	36	1,2-디클로로에탄	15	20	210																																																																																																								
				다이옥신(퓨란 포함)	500	1,000	3,000																																																																																																								
비 고 : 1 지역: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광천지·대·학교용지·구거· 양어장·공원·사적지·묘지인 지역과 어린이 놀이시설 부지 2 지역: 지목이 임야·영전·대·창고용지·하천·유지·수도용지·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 및 잡종지인 지역 3 지역: 지목이 공장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도로·철도용지· 제방·잡종지인 지역과 국방·군사시설 부지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법제 17 조	환경부장관은 대책기준을 넘는 지역이나 제 2 항에 따라 관할관서의장이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토양보전대책지역(이하 “대책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대책지역 내의 행위제한	법제 21 조 규칙 16 조	①누구든지 대책지역 안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토양에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 17.> ②누구든지 대책지역 안에서는 그 지정목적에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책지역 지정의 주요원인이 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오염물질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하는 시설 또는 3) 오염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 대책지역에 해당되지 않음 □ 관련시설 설치 금지																																																																																																									